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67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서삼석·정청래·위성곤

이개호・김원이・이형석

조오섭 • 이용빈 • 전용기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변화에 따라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방사업의 주된 관심이 종래의 단순 사방시설의 설치 및 복구 위주에서 포괄적인 산림재해 예방,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산림환 경 조성으로 변화하고 있음.

또한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의 체계적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방사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사방협회에서 운영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"사방협회"의 명칭을 "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"로 변경하고,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(안 제22조의2제1항, 제3항 신설 및 제4항).

법률 제 호

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의 제목 "(사방협회)"를 "(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사방기술"을 "사방·복원기술"로, "사방사업"을 "사방사업"을 "사망 사업 및 복원"으로, "사방협회"를 "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사업·조직"을 "조직"으로 한다.

-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사방사업 및 복원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의 점검·안전진단
- 2. 사방·복원기술 및 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
- 3. 사방사업 및 복원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- 4.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
- 5.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
- 6.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
- 7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
- 8.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사방협회는
이 법에 따른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의2(사방협회) ① 사방기술	제22조의2(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)
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, <u>사방</u>	① <u>사방·복원기술</u>
<u>사업</u> 과 관련한 조사·평가·진단	<u>사방사업 및 복원</u>
및 사방정책의 교육·홍보 등의	
사업을 하기 위하여 <u>사방협회</u>	<u>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</u>
(이하"협회"라 한다)를 둔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
	을 수행한다.
	1. 사방사업 및 복원과 관련한
	조사 및 사방시설의 점검·안
	<u>전진단</u>
	2. 사방·복원기술 및 정보 등에
	관한 국제교류
	3. 사방사업 및 복원과 관련한
	<u>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u>
	4.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
	<u>구 등 지원</u>
	5. 산사태 방지 지원 사업
	6.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
	7.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
	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
	<u>업</u>

<u>③</u>	협호	리의	사업	j·조건	<u>]</u> , –	그 빆	헤
필요	요한	사형	당은	농림	축산	식품	부
령.	으로	정힌	난다.				
<u>4</u>	• 5	(생	략)			

<u>⑤</u>·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